

2001	37	1	1	-	-	-	1	-	-	-	-				
2002	34	1	1	-	-	-	1	-	-	-	8				
2003	84	12	11	1	-	-	12	-	-	-	5				
2004	148	18	14	-	-	4	18	-	-	-	1	7	9		
2005	410	9	9	-	-	-	9	-	-	-	13	79	29		
2006	278	11	6	1	-	3	10	1	-	1	13	114	43		
2007	717	13	1	-	-	11	12	1	-	1	9	86	62		
2008	364	36	4	-	-	16	20	1 6	-	16	22* 4	79	10 9		
2009	324	74* 2	45	10	-	15	70	4	-	4	22	994	20 3		
2010	423	47* 3	20	8	-	10	38	9	-	9	43* 5	168	62		
2011	1,0 11	42	3	8	-	13	24	1 8	-	18	21* 6	277	90	4*2	13* 4,5
2012	1,1 43	60	25	-	-	20	45	1 5	-	15	31	558	18 7		4*5 ,6
2013	1,5 74	57	5	9	-	33	47	1 0	-	10	6	523	33 1		
2014	2,8 96	94	18	53	-	20	91	1	2	3	539	782	3 63	-	
2015	5,7 11	105	13	27	22	43	105	0	-	0	194	1,8 35	28 0		
2016	7,5 42* 9	98	17	10	34	34	95	3	-	3	246	6,0 13	73 1	2*3	-
2017	9,9 42	121	27* 7	24	30	35	116* 4	5	-	5	318	5,6 07	1,2 00	1	
합계	32, 734	799	220	151	86	257	714	8 3	2	85	1,4 91	17, 172	3,7 38	7	

변동 사항 반영 현황	32, 733 *9	792 *10	-	-	-	-	-	-	-	-	147 4*8	17, 172	3,7 38	7*1 0	17* 8
----------------------	------------------	------------	---	---	---	---	---	---	---	---	------------	------------	-----------	----------	----------

- *1 난센 연도별 난민현황은 난민인정취소, 인도적체류지위중단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해당연도의 수치만을 보여줍니다. 예를들어 2009 년도에 난민인정받은 사람이 2011 년에 난민인정이 취소가 된 경우, 2009 년의 인정자 수치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난민인정의 취소와 인도적체류지위 중단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현재의 현황은 표의 맨 밑 변동사항반영현황에서 확인해주세요.
- *2 2009 년에 인정받은 4 명이 2011 년도에 인정취소 (이후 법무부는 70 명으로 표기)
- *3 2010 년에 인정받은 2 명이 2016 년도에 인정취소 (이후 법무부는 45 명으로 표기)
- *4 2008 년도에 인도적 체류지위 받은 8 명이 2011 년도에 승소하여 난민인정 (이후 법무부는 2008 년 인도적체류 14 명으로 표기)
- *5 2010 년도에 인도적체류지위 받은 3 명이 2012 년도에 승소하여 난민인정, 2010 년도에 인도적체류지위 받은 5 명이 2011 년도에 이의심사에서 난민인정 (이후 법무부는 2010 년 인도적체류 35 명으로 표기)
- *6 2011 년에 인도적체류지위 받은 1 명이 2012 년 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인정 (이후 법무부는 2011 년 인도적체류 20 명으로 표기)
- *7 재정착, 가족결합 인정자는 1 차 심사 인정자와 따로 분류
- *8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인도적체류지위 변경된 17 명 반영한 현재 현황
- *9 2016 년 12 월 31 일 기준 정보공개청구 당시 2016 년 한해 동안의 난민신청자는 7,542 명이었으나 이후 법무부의 실수로 시스템에 중복 등록된 사례 발견되어 7,541 명으로 변동
- *10 2011 년부터 2017 년까지 난민인정지위 취소된 7 명 반영한 현재 현황

[표 2] 월별 난민 신청 현황 ('17.01~'17.12)

(단위: 건)

합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9,942	646	688	785	599	619	702	812	739	859	842	1,284	1,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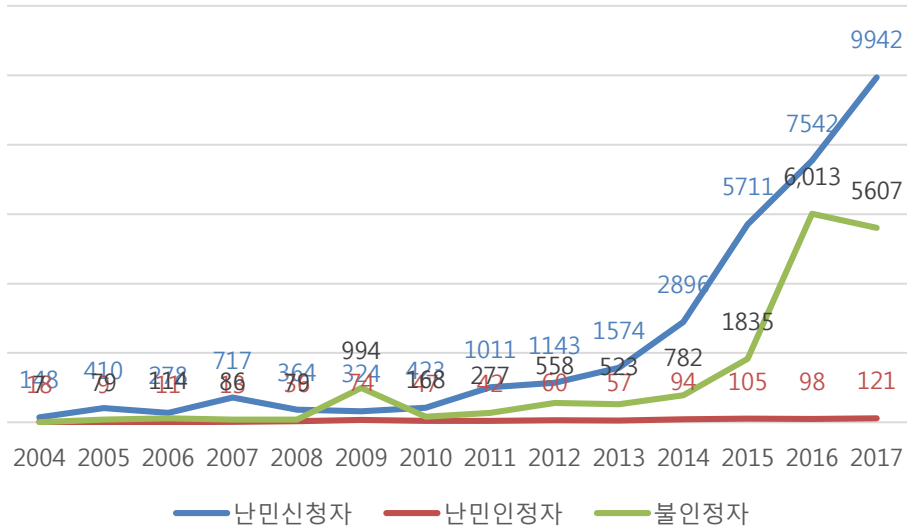
1994 년부터 2017 년까지 접수된 난민신청은 총 32,733 건입니다. 2017 년 한 해 동안에는 9,942 건의 난민신청이 있었습니다. 거의 1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한국에 보호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난민신청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2013 년부터는 매년 두 배 가까이 되는 증가 폭을 보였고, 2017 년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31%(2,400 건) 증가하여 2015~2016 년과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2017 년은 매월 평균 829 건의 난민신청이 전국에서 접수되었고, 이는 전년도 평균 월 629 건에 비해 200 건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17 년 한 해간 19,628 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¹ 이는 2016 년 10,901 건에 비해 80%(8,727 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난민법 시행 이후, 점점 떨어지는 난민인정률

¹ 2017년 12월 31일 기준 일본 국무성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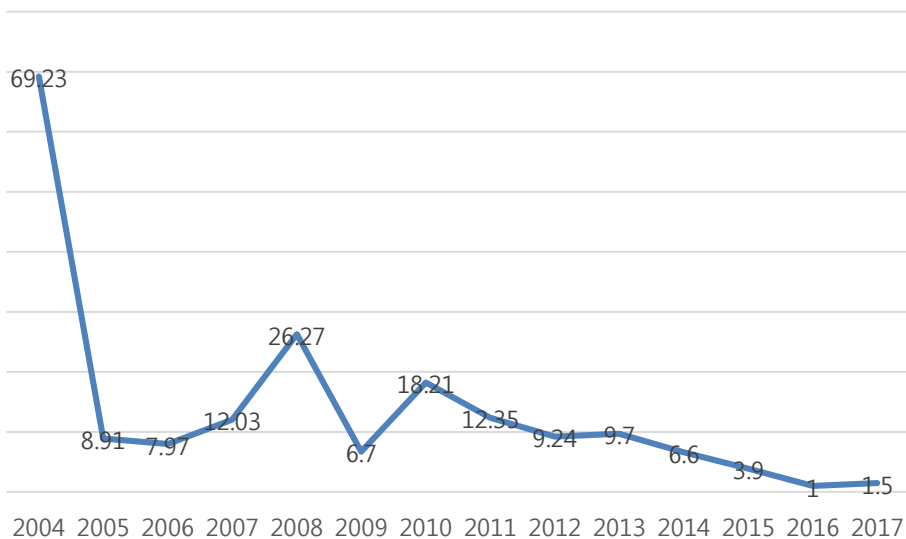
[그래프 1] 연도별 난민 신청, 인정, 불인정 추이 ('04~'17.12)

(단위: 건)



[그래프 2] 난민법 시행 전·후 연도별 난민인정률² ('04~'17.12)

(단위:%)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51%로 지난해 1.01%와 큰 변화가 없는 수치입니다. 난민인정률은 해당연도 심사결정자 수 대비 인정자를 계산한 값으로써 1차 심사, 이의신청 심사,

² 난민인정률=인정자(재정착 제외) / 심사종료자 (재정착 제외한 인정+인도적체류+불인정)%

가족결합, 재정착, 행정소송승소건을 모두 포함합니다.³ 2017년 한 해 동안 총 121 명이 난민인정을 받았지만, 그중 가족결합으로 인정받은 35 명과 재정착난민 30 명, 취소자 1 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사람은 단 55 명에 불과합니다.

난민인정률은 2010년부터 매년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법이 시행된 연도인 2013년을 제외한 이후 4년의 평균 인정률은 3.25%에 그칩니다. 오히려 난민법 시행 전인 2004년부터 2012년의 난민인정률이 평균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2. 신청사유별 현황⁴

법무부는 매년 사유별 신청자 통계를 총 8 가지(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가족결합, 기타, 내전)기준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고, 난민신청서에는 난민법의 기준에 따라 5 가지 사유(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신청사유 통계 분류 기준을 정보공개청구 하니, '① 난민신청자가 신청할 당시 난민인정신청서 상 선택한 박해사유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② 내전 및 가족결합 등 기타의 경우 기재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③ 한 사람이 2 개 이상의 복수 사유가 있을 시 대표적 사유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고 ④ 난민면접 후 신청 사유가 정정되는 경우도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표 3]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08~'17.12)⁵

(단위: 건)

연도	합계	정치적 의견	종교	인종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가족결합	국적	기타
2008	364	126	67	66	29	-	0	76
2009	324	88	83	3	20	-	0	130
2010	423	79	57	86	7	-	0	194
2011	1,011	266	151	83	55	-	0	456

³ 가족결합은 난민인정자의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했을 때 가족들에게도 인정자의 지위를 주는 것으로, 법무부의 실질적인 심사와는 무관합니다. 재정착난민은 해외 난민캠프에서 유엔난민기구가 난민 인정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한국에 초대하는 것으로, 이 또한 법무부의 심사를 통한 인정이 아닙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의 난민인정심사가 의미 있게,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온전히 법무부의 심사로 인정된 난민 수만을 인정률에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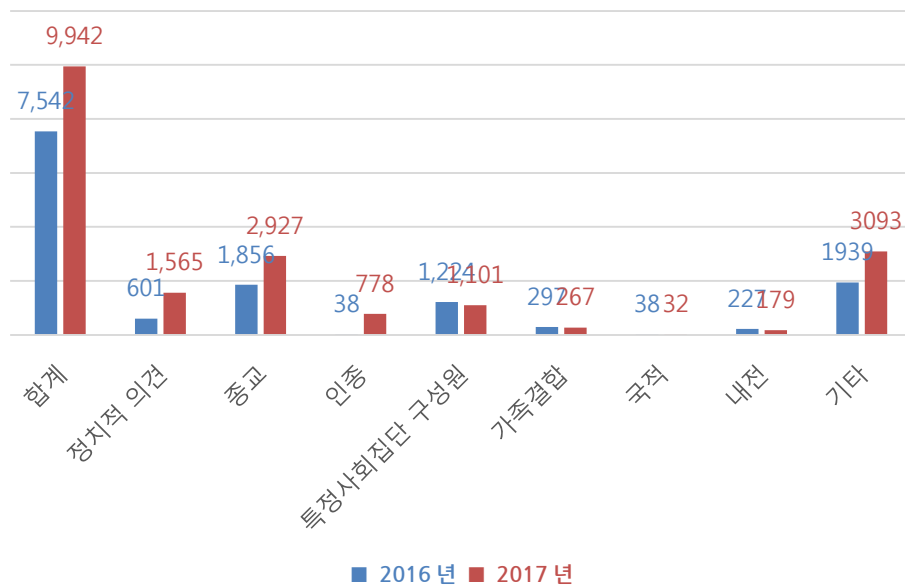
⁴ 법무부 내에 '난민'의 통계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통계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난민과의 입장을 유선상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통계를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접수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임의로 신청사유를 분류하여 통계를 냅니다. 이 때문에 신청사유가 2 개 이상인 신청자의 정보가 통계에 정확히 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타'와 '내전'항목은 분류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신청서에 근거해 분류하는 나머지 5 가지 사유에 비해 이 두 가지 항목은 담당공무원이 난민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유별 현황을 파악하실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⁵ 괄호는 전년도와 증감비교

2012	1,143	348	291	35	52	29	3	385
2013	1,574	289	369	78	63	65	2	708
2014	2,896	595	903	106	169	114	7	1,002
2015	5,711	1,397	1,311	200	721	43	7	2,032 (내전 428)
2016	7,542 (+1,831)	601 (+401)	1,856 (+545)	38 (+31)	1,224 (+503)	297 (+254)	38 (+31)	2,166(내전 227) (+134)
2017	9,942 (+2,400)	1,565 (+961)	2,927 (1,071)	778 (+740)	1,101 (-123)	267 (-30)	32 (-6)	3,272(내전 179) (+1,106)

[그래프 3]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16, '17)

(단위: 건)



[표 3]은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입니다. 2017 년에도 여전히 종교와 정치적 의견을 사유로 한 난민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전년도보다 접수 건도 2 배가량 늘었습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사유는 '인종' 입니다. 2016 년도 38 건에서 2017 년도 778 건으로 증가하여 증가율 1,94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2016 년에 높은 신청률을 보였던 특정사회집단구성원의 경우, 2017 년에는 123 건이 줄었습니다. 국적 사유 또한 6 건이 감소했고, 내전을 사유로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전년도보다 201 명 줄었습니다.

최근 난민신청자의 권리 제한에 있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재신청자⁶와 철회자의 사유별 신청현황도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해당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3. 출신국가별 현황

[표 4] 국적별 난민 심사 현황 ('94~'17.12)⁷

(단위: 건)

국적	신청	심사중			종료					
		계	1 차 심사	이의 신청	소계	난민보호		불인정		철회
						난민	재정착	난민 불인정	인도적 ⁸	
총계	32,733	9,557	7,209	2,348	19438	706	86	17172	1474	3738
파키스탄	4,268 (+667)	804	450	354	2919	56	0	2834	29	545
중국	3,639 (+1,413)	1,119	768	351	1945	8	0	1903	34	575
이집트	3,244 (+741)	629	407	222	2348	15	0	2329	4	267
나이지리아	1,831 (+486)	431	356	75	1296	4	0	1286	6	104
카자흐스탄	1,810 (정보없음)	1,152	819	333	471	3	0	468	0	187
방글라데시	1,455 (+383)	413	346	67	917	104	0	810	3	125
시리아	1,326 (+103)	68	49	19	1153	4	0	29	1120	105
기타	15,160	4,941	4,014	927	8389	512	86	7513	288	1830

[표 4]는 국적별 난민심사 현황입니다. 1994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누적 난민신청자 수를 국적별로 분류하면 파키스탄-중국-이집트-나이지리아-카자흐스탄-방글라데시-시리아 순으로 많습니다. 가장 많은 누적 수를 기록한 국적은 파키스탄으로 총 4,268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국적은 중국이며, 전년도 대비 63%(1,413명) 늘어났습니다. 중국 국적자의 신청은 2015년 555건, 2016년 907건, 2017년 1,413건입니다. 개인에 따라 신청사유에 차이가 있으나, 난민인권센터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중국 국적 신청자는 종교 및 정치적

⁶ 2016년 7월 체류관리 강화 지침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었던 체류할 권리, 일할 권리(난민신청 6개월 이후 가능)가 재신청자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됨으로써 부당한 구금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⁷ 괄호는 전년도와 증감비교

⁸ 인도적체류지위는 난민 지위 불인정에 속합니다.

의견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합니다. 종종 언론이 중국 국적 난민신청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요인으로 제주 무사증 제도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난민이 박해 위협을 피해 인접 국가를 피난처로 선택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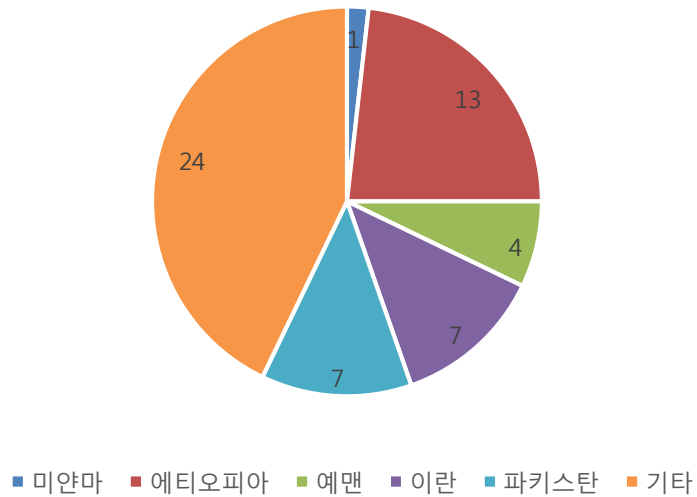
[표 5] 2017 년 국적별 난민 인정자 · 가족 재결합 현황 ('17.01~'17.12)⁹

(단위: 건)

	합계	미얀마	에티오피아	예멘	이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기타
난민인정자	121	35	23	11	11	9	-	-	32
가족재결합 (재정착)	35	4(30)	10	7	4	2	4	2	2
가족재결합 제외 인정자 수	86	1	13	4	7	7	-	-	24 (방글라데시, 태국 포함)

[그래프 4] 2017 년 국적별 난민 인정자 현황 ('17.01~'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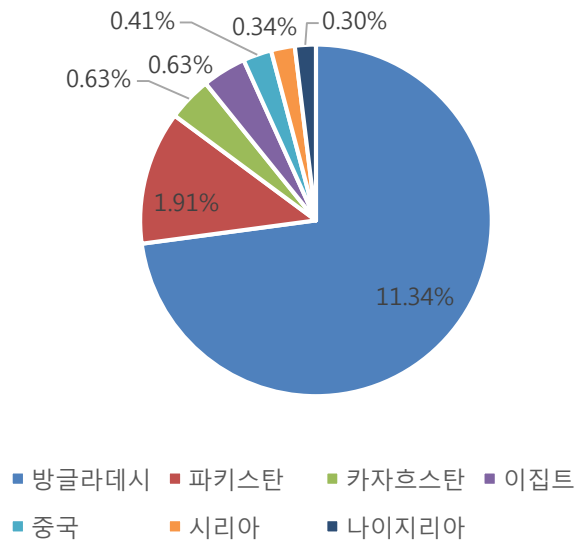
(단위: 건)



[그래프 5] 국적별 난민인정률 현황('94~'17.12)

(단위: %)

⁹ '-' 는 정보 비공개로 정보가 없습니다.



전체 심사종료자 수 대비 인정자 수(재정착제외)를 반영한 국적별 인정률입니다. 방글라데시 11.34%, 파키스탄 1.91%, 카자흐스탄 0.63%, 이집트 0.63%, 중국 0.41%, 시리아 0.34%, 나이지리아 0.30%입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인정률이 가장 높은데, 이는 난민법 시행 전의 배경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방글라데시 출신의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법률 조력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게 되면서 다른 국적에 비해 난민인정을 많이 받았던 선례가 반영된 인정률입니다. 오히려 난민법 시행 이후에는 인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인정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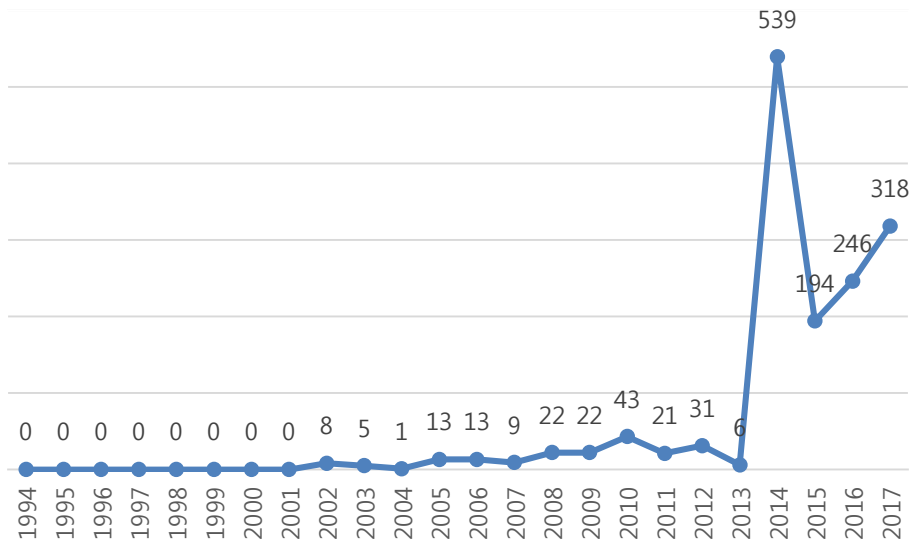
한편 시리아 국적은 심사종료자 1,153명 중 단 4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시리아 국적 심사종료자의 97%인 1,120명은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았습니다. [표 5]는 전체 인정자와 가족재결합 인정자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가족 재결합 난민을 제외한 난민 인정자 중 2017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인정 수를 보이는 국적은 에티오피아(13명)입니다. 다음으로 이란(7명), 파키스탄(7명)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82개 국적 출신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이집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적을 중심으로 난민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4. 인도적체류자 현황

[그래프 6] 연도별 인도적체류자 추이 ('94~'17.12)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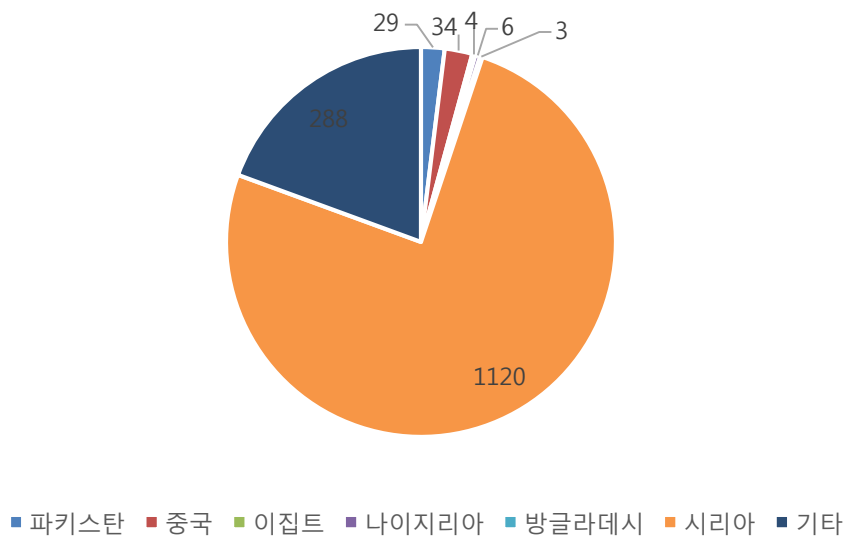
(단위: 건)

¹⁰ 인도적체류자격 취소 미반영



[그래프 7] 국적별 인도적체류자 누적 수 ('94~'17.12)*

(단위: 건)



* 국적별 인도적체류자 누적수는 전체통계 1,474 명과 오차가 있어 법무부에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데로 정확한 통계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인도적체류허가는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정황상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보충적으로 부여되는 지위'입니다. 내전 등의 본국 정황으로 한국에 장기간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이 대부분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습니다.

2017년에는 318 명이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았습니다. 전체 누적 인도적체류자 수 중 압도적인 비율인 75.9%(1,120 명)를 차지하는 국적은 여전히 시리아입니다. ([표 4, 그래프 8] 참고) 법무부는 시리아 내전이 격화되던 2015년 10월 16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시리아인 난민신청자의 절대다수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대다수의 시리아인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내전만을 이유로 신청하였기 때문에 난민 신청은 기각될 수밖에 없었지만, 본국송환은 어려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대부분의 인도적체류지위자는 삶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날이 인도적체류지위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는 이들의 권리를 분명히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5. 기타 현황

[표 6] 2017년 비자유형 별 난민신청 현황 ('17.01~'17.12)

(단위: 건)

단계	C 계열	B 계열	E 계열	G 계열	기타 ¹¹	계
인원	3,999	3,994	574	540	835	9,942

2017년 비자유형 별 난민신청 현황입니다. 전체 신청자 9,942명 중 C 계열의 비자가 3,999명, B 계열의 비자가 3,994명으로 다른 비자에 비해 현저히 많습니다. C 계열의 비자에는 일시취재 C-1, 단기방문 C-3¹², 단기취업 C-4가 있습니다. B 계열은 사증면제 B-1, 관광통과 B-2로 무사증 입국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가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기 위해 높은 국경의 문턱을 넘어야 하므로 다른 비자 유형보다 접근성이 높은 C와 B 계열 비자의 난민신청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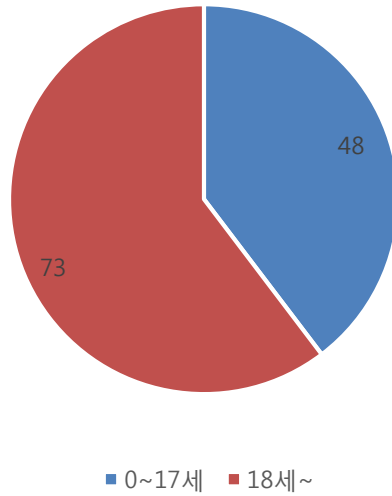
E 계열에는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연수취업 E-8,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등 다양한 입국 목적의 비자 유형이 포함됩니다. G 계열은 외국인 환자 등에게 부여되는 기타 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프 8] 2017년 난민인정자 중 아동 현황 ('17.01~'17.12)

(단위: 건)

¹¹ C, B, E, G 비자 외 모든 비자유형 포함

¹² 난민법 제 37조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 한하여 가족결합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 90일의 체류 기간이 보장되는 C-3단기 일반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표 7] 2017년 65세 이상 난민 현황 ('17.01~'17.12)

(단위: 건)

난민신청	난민인정	인도적체류허가
5	0	2

[표 8] 2017년 여성 난민 현황 ('17.01~'17.12)

(단위: 건)

난민신청	난민인정	인도적체류허가
2,117	69	112

2017년 난민인정자 중 아동은 총 48명으로 전체의 39.6%를, 여성은 69명으로 57%를 차지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신청자 5명, 인도적체류허가자 2명으로 총 7명이 있습니다. 아동, 노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의 누적 통계는 법무부의 정보공개청구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신 받는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고은지, 이슬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8.02.05 회신)